

학군에 위법적 차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알기

공공 교육 관리 사무국(The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SPI)은 워싱턴주의 K-12 공교육 감독 책임 기관입니다. OSPI 내의 형평성 및 시민권 사무국(Equity and Civil Rights Office)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비차별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학군,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차별”이란 무엇인가?

차별이란 ‘보호 클래스’라고도 하는 특정한 정의 단체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 또는 단체가 불공정 또는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은 특정 개인이 보호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르게 대우를 받거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의 이용을 거부당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차별은 학교나 학군이 학생이나 교원의 장애를 수용하지 않을 때도 발생합니다.

학대(보호 클래스 기준)와 성적 학대도 이로 인해 편파적인 환경이 조성될 때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 클래스’란 무엇인가?

보호 클래스란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단체로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법에 따라 차별 및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워싱턴주 법이 정의하는 보호 클래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별
- 인종/피부색
- 신념/종교
- 국적
- 장애 또는 안내견이나 서비스 동물의 사용
- 성별 표현이나 정체성 등 성적 기호
- 제향군 명예 제대나 군대 상태



자녀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를 자녀의 교사나 교장 교사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는 상황에 가능한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교장을 만날 수 없을 경우 학군의 주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군에는 차별 문제에 응대하는 책임 담당자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담당자를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고 장애 관련 문제의 경우 섹션 504 코디네이터라고 부릅니다.

만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군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차별 문제의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다음 기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 시민권 사무국(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915 Second Avenue, Room 3310
Seattle, WA 98174-1099
(206) 607-1600 / TDD: (877) 521-2172
www2.ed.gov/about/offices/list/ocr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ashingto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

P.O. Box 42490
Olympia, WA 98504-2490
(360) 753-6770 / 수신자부담: (800) 233-3247 / TTY: (800) 300-7525
www.hum.wa.gov

학교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학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학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내용과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한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인 민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군에 바라는 점을 기술하면 도움이 됩니다. 민원서에 반드시 서명하십시오.

학군이 민원에 대해 무엇을 합니까?

학군이 지정한 민원서 수신 담당자가 문제를 조사한 후 교육감에게 민원서의 서면 보고서와 조사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귀하와 학군이 조사를 수행하는 대신 민원 해결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군 교육감은 무엇을 합니까?

교육감은 **달력 기준 30일** 내에 서면 서한을 보내게 되고, 여기에는 차별 주장의 거부 또는 학군이 취하게 될 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설명이 기술됩니다. 이 서한에는 교육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 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시정 조치는 교육감의 서한 이후 **달력 기준 30일** 이내에 취해져야 합니다.

교육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나의 민원서에 아무도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단계는 학교 위원회에 항소하는 것입니다.

항소가 무엇입니까?

항소란 공식적인 결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학교 위원회에 항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학교 위원회에 서한을 작성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서에는 본인이 항소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서면상의 결정과 학군에 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소서는 교육감의 답변 서한을 받은 후 **달력 기준 10일** 이내에 학교 위원회 총무(Secretary)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학교 위원회는 항소서를 수신한 후 **달력 기준 20일** 이내에 공청회의 일정을 결정합니다. 다른 날짜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교육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항소와 관련된 증인을 참석시키거나 기타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청회 후 **달력 기준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서를 귀하에게 발송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에는 OSPI에 항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교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OSPI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OSPI에 항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SPI에 서한을 작성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서에는 본인이 항소하고자 하는 학교 위원회의 결정과 학군에 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소서에 서명한 후 이를 학교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지 **달력 기준 20일** 이내에 OSPI로 보내야 합니다. 다음 주소로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OSPI
Administrative Resource Services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
전화: (360) 725-6133

OSPI가 하게 되는 일은?

OSPI는 행정공청회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OAH)을 통해 행정법 판사와 함께 공청회의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에 대한 정보가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공청회에서는 학교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항소와 관련된 증인을 참석시키거나 기타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판사의 판결서를 받게 됩니다.



Equity and Civil Rights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
(360) 725-6162 팩스: (360) 664-2967
TTY: (360) 664-3631
이메일: equity@k12.wa.us
April 20, 2011 KOREAN

참고 웹사이트: www.k12.wa.us/Equity

OSPI는 성별, 인종, 신념, 종교, 피부색, 국적, 나이, 제향군 명예 제대 또는 군대 상태, 성별 표현 또는 정체성 등의 성적 기호, 감각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의 존재 여부, 장애인의 안내견 또는 서비스 동물 사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평등한 이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차별 문제에 대한 질문과 불만 사항은 형평성 및 시민권 사무국(Equity and Civil Rights Director), (360) 725-6162 또는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로 문의해 주십시오.